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4. 4.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과 장 : 김 승 환
사무관 : 김 춘 기
전 화 : 500-1819
쪽 수 : 3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4월 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농어촌관광의 선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 관광농원 · 농어촌민박 등급제 도입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시설·프로그램·서비스 수준 등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도입

• 2010년 현재 체험마을 1,675개, 관광농원 458개, 농어촌민박 19천 여개

<농어촌관광의 추세 및 등급제 도입 배경>

- 최근 '보는 관광'에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관광'으로 변화되는 추세
 - 그동안 농식품부가 추진해온 농어촌관광사업이 도시민에게 여가와 휴식의 장으로, 농어촌에는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매김
- 2010년말 기준 농어촌 체험마을(558개) 방문객수 532만명(매출액 794억원)
- 다만, 농어촌 관광 상품의 품질·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준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등급 평가 및 등급 정보 제공>

- 따라서, 농어촌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숙박·음식 등에 대한 품질수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한 후 호텔업 등과 같이 사업자에게 등급 부여
- 농어촌 관광객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관광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등급 정보 제공

<등급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등급제가 도입되면 농어촌관광 사업자는 체험프로그램 및 위생 등에 대한 품질혁신에 주력하게 되어 농어촌관광사업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
- 관광객은 등급정보를 보고 맞춤형 농어촌관광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

<관련법 개정 등 등급제 도입 제도 마련>

- 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 2013년도부터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등급 평가지표 개발 용역 및 평가제도 신축적 운영>

- 농어촌관광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용역('11.3~11월)을 거쳐 각 관광사업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

- 농어촌관광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지표 고시 및 홍보**
-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사업자부터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초기에 등급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

<등급 평가 주기 및 등급 구분>

- ☐ 등급 평가는 농식품부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년 주기로 실시
 - 농어촌관광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예고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하여 최우수·우수 등 4등급으로 구분
 - 호텔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급표시 방식과 유사한 식별 표지를 부여하여 부착
- ☐ 앞으로 등급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농어촌관광상품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국내외 관광객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올해 안에 정보공유와 공동으로 마케팅·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마을·민박·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사업의 시·군, 시·도,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 등급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도입 방안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

2011. 4. 4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목 차>

I. 배경 및 필요성	1
II. 유사제도 검토	2
III. 등급제 도입 방안	8
IV. 향후 추진일정	13

I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관광이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 추세
 - 농어촌체험마을의 국내관광 점유 비중이 13.9%로 증가
 - * '09년 국내여행 참가자수 대비 농어촌체험마을(462개) 방문객수 = 4,331천명/31,201천명
- 농어촌체험마을·관광농원·민박(가칭, 농어촌관광사업)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시설개선 및 서비스 질 등을 높이고 있으나 표준화된 기준과 이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지표가 없음
 - 마을마다 수준차이가 커서 관광객 입장에서 불만의 원인
- 농어촌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는 등급제 도입이 필요
 - 등급제 도입방안 마련(3월), 전문가·시도, 체험마을·관광농원·민박 대표 등 2회 의견수렴(3.16, 3.22), 기본계획 반영
 - * 프랑스, 영국 등은 농장단위의 등급제 운영을 통해 품질관리 및 정보제공

- ◇ (정부) 표준화된 기준이 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품질개선 유도
- ◇ (사업자) 객관적인 평가로 공인을 받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차별화로 수익과 연결 기대
- ◇ (관광객) 정보에 의해 방문마을을 선택하고 품질 높은 프로그램, 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신뢰성 및 만족도 향상

II 유사제도 검토

1. 호텔업 등급제

- (목적) 호텔 이용자에게 호텔수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시설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을 촉진 하여 호텔산업의 발전 도모
-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16호(2009. 4. 20)
- (등급결정기관 등록)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문화부장관에게 호텔업 등급결정기관으로 등록
 - * 등록기관(2개소) : 관광호텔업 협회, 관광협회중앙회
- (등급결정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
- (등급결정 및 절차)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후 등급결정
 - 3년(유효기간) 주기로 재평가 후 등급결정
 - 평가단은 분야별 1인이상으로 하되 전체 6인이상으로 구성
 - 분야별(10개) 항목별(76개) 평가, 점수화하여 일괄 등급결정

등 급	표시방법	등급기준 (1000점 만점)
특1급	무궁화 5개(금색)	900점이상
특2급	무궁화 5개(녹색)	800점이상
1급	무궁화 4개(녹색)	700점이상
2급	무궁화 3개(녹색)	600점이상
3급	무궁화 2개(녹색)	600점이하

2.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 ☐ (목적) 식품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 도모
- ☐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61조
- ☐ (등급결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있는 공무원 및 위촉자
- ☐ (등급결정 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한지 1월 이상이 경과한 업소
- ☐ (등급결정 및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업소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생관리 등급 평가 (일괄등급결정)
 -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구분 관리 (94개 항목 200점 만점)
 - 자율관리업소(151점~200점) :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소(90점~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소(0점~89점) : 시설 및 관리가 미흡한 업소
 - 자율관리업소는 우수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
 - 2년 주기로 정기평가 (2년 동안 출입·검사·수거 등 위생검사를 하지 않고, 시설개선비 용자 지원)
 -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 실시

3.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 ☐ (목적)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등)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
- ☐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14조,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제22조
- ☐ (등급결정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 ☐ (등급결정 대상) 시·군·구에 신고한 공중위생업소
- ☐ (등급결정 및 절차) 시·도지사는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세부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 (종합등급결정)
 -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
 - 2년 주기로 정기평가
 - 등급구분 : 100점 만점 평가 (숙박업 : 3영역 45개 항목, 이용업 : 3개영역 38개 항목)
 - 최우수업소(90점 이상) : 녹색등급
 - 우수업소(80점 이상) : 황색등급
 - 일반관리대상업소(80점 미만) : 백색등급
 - 평가결과 우수한 업소는 우수 업소 로고 수여

4. 외국의 사례

□ 프랑스 : 지트(Gites, 농가민박)

- 1954년 관련법이 제정되어 등급화 시작, 6개의 관광서비스 유형별 품질관리규약을 제정하여 등급평가

지트의 종류	서비스 유형	내용
1. 지트 뒤탈 Gîte rural (농촌 지트)	숙박	농촌이나 바닷가,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방과 식당, 주방시설이 딸린 독립적인 가옥이나 임대시설 주말·주·방학기간 중 한 주 또는 몇 주 단위로 임대. 지트드프랑스의 품질현장 규정에 따라 안락한 정도에 따라 이삭 수(1-5개)를 표시하여 등급 표시
2. 샹브르 도트 La chambre d'hôtes (집자리와 아침식사)	숙박 + 조식	전통적 양식의 농가나 시골저택, 성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하루나 며칠 동안 숙박 일정을 보내는 장소 최대 객실 수는 6개이며 숙박비에는 아침식사가 포함
3. 지트 당팡 Le gîte d'enfants (어린이 지트)	어린이 농촌 체험	어린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농촌이나 바닷가, 산촌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다른 아이들과 농촌생활이나 여가를 체험 '지트 드 프랑스'는 어린이를 맞을 수 있는 역량과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트 당팡을 선발 '지트 드 프랑스'의 라벨과 품질현장(charte nationale de qualité)에 가입여부로 품질이 보증되며, DDASS(위생사회국)이나 DDJS(청소년체육국)의 정기적인 방문과 감독
4. 지트 데따프 Le gîte d'étape 지트 드 세주르 gîte de séjour	단체 숙박	지트 데따프는 하이킹이나 사이클, 승마 여행 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 지트 드 세주르는 주말 또는 휴가기간 동안 체류하기를 원하는 모임을 위한 곳으로 동창회, 가족 모임 외 각종모임에서 세미나와 자연탐구체험, 스포츠 연수 등을 진행

지트의 종류	서비스 유형	내용
5. 샬레-루아지르 Le chalet-loisirs	숙박 (방갈로)	자연 속에 위치한 통나무집에서 체류하며 낚시, 자전거타기, 수영, 마술(馬術), 테니스, 양궁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한 장소에 4-6인용 오두막이 3-25개 정도이고 작은 규모의 부엌과 거실, 급배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6. 농장 야영 Le camping à la ferme	야영	텐트, 카라반, 캠핑카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농장 근처의 자연에서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 배구·수영·테니스 등과 어린이놀이방을 운영하며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구입가능(우유, 달걀, 가금류, 과일, 야채, 포도주 등) 이삭수 4개로 등급을 분류하며 천막 캠프는 6동을 설치, 최대 수용인원은 20명 정도임. 자연공간(Aire naturelle)은 7-25개까지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 28-100명을 수용

- 각 대상별 5개 부문에 대해 등급심사를 거쳐 등급을 나누고 (대상에 따라 3~5단계로 구분) 품질관리 및 공동마케팅
- '밀 이삭'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결정된 등급은 5년간 유효

※ 지트 드 프랑스(Gites de France) : 지트연합체

- 1955년 전국지트협회 설립, 회원 5만명(매년 2천 여 명 신규회원 가입)
- 이용객 : 3,000만명 숙박(2009년), 2조 2천억 원 지출
- 연합체에 근무하는 600여명의 직원들이 국내·외 홍보, 공동마케팅(인터넷 예약시스템의 운영), 서비스 유형별 품질관리규약의 제정 및 운용, 등급 관리 및 서비스품질 개선, 새로운 농촌관광상품의 개발 등을 수행함

□ 영국 : 팜스테이(Farm stay, 농가민박)

- 농촌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등급화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에서 등급 의무화를 추진
- 등급화 대상은 'Guesthouses, Bed & Breakfasts, 대가민박, 캠프장' 등 임
- 등급평가·관리기관은 ETC(English Tourism Council)', RAC(Royal Automobile Club), AA(Automobile Association) 등 3기관 임

※ 영국은 ETC가 농촌관광 뿐만 아니라 전체 관광산업의 등급화 추진

- 각 대상별 7개 부문에 대해 등급심사를 거쳐 5등급을 나누고 품질관리
 - 평가항목은 청결성과 정돈성, 서비스와 환대, 객실 시설, 욕실·샤워실·화장실 및 부대시설, 식사의 질과 서비스, 라운지 등의 공유 공간, 안정성과 보안성 등
 - 등급을 부여받기 위한 최소 요구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농촌관광경영자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준역할
- 등급평가 방법은 평가위원이 일반 손님처럼 예약하고 방문하여 직접 체험한 후 평가
- '다이아몬드' 혹은 '별'로 등급을 표시하고 있으며,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추가로 '은, 금,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부여하고 있음
- 결정된 등급은 1년간 유효

III 등급제 도입 방안

1. 기본방향

- (제도도입) 농어촌관광사업의 품질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급제 도입
 - 시설·프로그램·서비스·안전성·위생관리 수준 등 향상에 중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뒷받침
- (대상) 「도농교류법」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 정비법」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등급결정
 - 사업자가 도시민 등 이용자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 (단, 민박은 숙박과 취사시설 제공)
- (계획적 평가) 소비자의 체험·식품위생 등과 관련되어 등급 결정기관의 평가계획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등급결정
 - 국민의 위생안전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위생 안정을 위해 시장·군수의 점검계획 하에 2년 주기로 평가하여 등급결정
- (등급결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정부의 등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 사업 품질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등급제의 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육성 검토
- (등급결정방법 및 평가항목) 등급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진단관리 및 등급시스템 개발(3~11월, 농어촌연구원)

2. 등급평가 대상

- ☐ 농어촌관광의 체험관광·숙박·음식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3개사업을 대상
-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숙박·음식 제공 기능을 모두 수행하거나 일부를 수행하며, 민박은 숙박 기능만 제공
- 농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험관광과 숙박·음식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사업의 등급화 필요

3. 등급평가 및 등급조정

- ☐ 관련법에 따라 신규사업자로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 * 체험마을사업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지정,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제85조, 민박은 제86조에 따라 신고
- ☐ 농어촌관광사업자가 등급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 농어촌관광사업자가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등급결정기관

-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평가계획을 수립, 평가단을 구성·평가하여 등급결정
- 현장평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위탁기관에 위탁
- 정부 인증으로 평가의 통일성·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고, 예산 확보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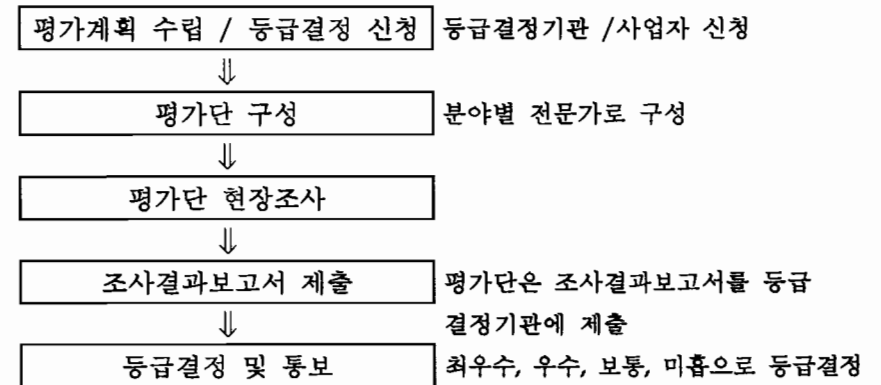
-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가 정착된 이후에 등급평가 결정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추진

- 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등 각 협회를 양성하여 위탁하거나 도농교류법 제26조의 위탁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등
 - 위탁할 경우 민간 자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평가기관이 난립할 경우 과열경쟁으로 평가의 질저하 등 신뢰성 저하 우려
 - 체험마을·민박 등 영세한 사업자는 평가비용을 부담하는 등 자부담이 늘어 날 수 있음

5. 등급결정 절차 및 방법

- ☐ 등급결정기관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되, 평가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우선 평가

- 등급결정기관은 자체 점검계획하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



- ☐ 농어촌관광사업은 평가결과 취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결정
 - 숙박, 음식, 체험 등으로 유형별 등급제와 유형별 취득 점수를 합산하는 종합등급제로 병행 운영하고 이를 공개
- ☐ 평가에 따른 취득 점수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여 종합등급화
 - 등급표지는 국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별(☆ star)로 하고
 - 최우수는 별 5개, 우수는 별 4개, 보통은 별 3개를 부여하여 신뢰성을 높임
 - 유형별 등급은 로고 없이 취득 점수로 구분
- ☐ 등급결정기관은 등급을 “웰촌포털”과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시민 등 관광객에게 정보 제공
 - 종합등급 및 유형별 등급은 최우수·우수·보통으로 3단계만 공개

6. 사후관리방안

- ☐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개선대책 추진
- ☐ 부여된 등급에 맞는 수준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 구축
- ☐ 등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 노후시설개 보수비 용자, 포상 등 인센티브 추진

7.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연구용역 추진

- ☐ 「도농교류법」 개정 일정과 연계하여 용역추진 중 (‘11.3~11)
 -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연구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등 사업별·유형별 적용할 수 있는 등급결정방법·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급결정기관 요건 등 마련
- ☐ 등급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 기능
 - 등급별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등급평가제도 체계화
- ☐ 평가항목은 이용객의 시설 이용공간과 서비스 영역에 비중을 높혀 소비자 관점에서 설정
 - 소비자가 요구하는 편리성, 안락성, 서비스 질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숙박, 체험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위생 등 주 영역에 중점을 두되, 전기·통신·참여자 복지 등 부가영역도 평가반영
- ☐ 등급표지는 호텔업 등급 등과 차별이 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 (크기, 색상, 로고, 글씨체, 재질 등)

IV 향후 추진일정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도입 기본계획 수립 : 3월
 - 정부입법계획 제출('10.11)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도입에 따른 전문가, 시도, 체험마을·관광농원·민박사업자 자문회의 개최(3.16, 3.22)
-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법률개정 절차 진행 : 4~5월
 -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우리부 안 확정, 관계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정책통계기반평가, 행정규제심사
- 법제처 제출 등 : 6~7월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 국회 제출 : 8월
 - 법안 검토 등